

기금운용심의위원회규정

규정번호 : 3-46

제 정 일 : 2018.11.15.

개 정 일 : 2023.3.28.

제 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금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- ③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2.2.24)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처장(서울), 기획조정처장, 대외협력처장, 예산조정팀장, 재무회계팀장, 서울총학생회장, 글로벌 총학생회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단,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 같음한다.(개정 2022.2.24)

④ 임명직위원은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14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3.3.28)

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5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,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.

제 6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행정지원처장(서울캠퍼스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기금의 만기 시 소집하는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 위원의 제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조(회의록)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 이때 참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에 대한 참석위원의 보전책임과는 무관하다.

제 8조(관계 부서의 협조의무) 위원회 및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 3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은 물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계 부서는 지체 없이 위원회 및 각 위원의 요구사항을 수행, 협조해야 한다.

제 9조(위원의 윤리 준칙) 위원은 기금을 심의·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(개정 2019.5.1.)

1.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2. 위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3.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,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10조(세칙) 이 규정의 제 3조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11조(개정) 본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

부 칙(2018. 11. 15)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 5. 1)

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2. 2. 24)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3. 28)

이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